

서울고등법원 2023. 6. 22 선고 2022나204785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

피고, 피항소인 1. B

2. C

3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교륜

변 론 종 결 2023. 5. 25.

판 결 선 고 2023. 6. 22.
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0. 21. 선고 2021가합528877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E이 피고 B에 대하여 한 2020. 9. 4.자 20,000,000원, 2020. 9. 16.자 97,000,000원, 2020. 10. 28.자 80,500,000원, 2020. 11. 4.자 27,000,000원, 2020. 11. 23.자 10,000,000원, 2020. 11. 30.자 6,000,000원, 2020. 12. 15.자 5,000,000원의 각

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. 피고 B은 원고에게 245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E이 피고 C에 대하여 한 2020. 12. 11.자 35,120,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. 피고 C은 원고에게 35,12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E이 피고 D에 대하여 한 2020. 10. 23.자 5,000,000원, 2020. 12. 15.자 20,000,000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. 피고 D는 원고에게 2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따라서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[고쳐 쓰는 부분]

○ 제1심판결 제11면 제19행의 “10억 여원”을 “1억 여원”으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13면 제1행~제14면 제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『살피건대, E이 2020. 9. 16. 피고 B에게 97,000,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,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7호증, 제48호증의 1,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 B은 2020. 7. 13. 자신의 P은행 계좌(계좌번호 3 생략), 이하 ‘(계좌번호 3 생략) 계좌’라고 한다)에서 자신의 또 다른 P은행 계좌(계좌번호 4 생략), 이하 ‘(계좌번호 4 생략) 계좌’라고 한다)로 97,000,000원을 송금하면서 (계좌번호 3 생략) 계좌의 거래내역 적요란에 “9.13”, (계좌번호 4

생략) 계좌의 거래내역 적요란에 “O”이라고 각 기재하였고, 그 직후에 (계좌번호 4 생략) 계좌에 입금된 돈 중 96,000,000원을 E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(계좌번호 4 생략) 계좌의 거래내역 적요란에 “E9.13”, E 명의의 I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적요란에 “O. 9.13”이라고 각 기재한 사실, E은 2020. 9. 16. 피고 B의 (계좌번호 4 생략) 계좌로 97,000,000원을 송금하였고, 그 직후 피고 B은 (계좌번호 4 생략) 계좌에서 (계좌번호 3 생략) 계좌로 97,600,000원을 송금하면서 (계좌번호 4 생략) 계좌의 거래내역 적요란에 “O”, (계좌번호 3 생략) 계좌의 거래내역 적요란에 “Y수금”이라고 각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이에 비추어 보면 제2 송금행위로 지급된 금원은 E이 2020. 7. 13.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96,000,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과 피고 B 사이에 E이 제2 송금행위를 통해 지급한 금원을 피고 B에게 무상으로 공여하여 이를 피고 B에게 중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데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』

○ 제1심판결 제18면 제14행의 “...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과 ...”를 “...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및 위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중개수수료와 ...”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20면 제4~5행의 “... E이 O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...”를 “... E이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...”로 고쳐 쓴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인겸, 판사 이양희, 판사 김규동